

프로세스명	규정 · 지침 > 경영관리 > 경영일반 > 이사회 운영 규정 (P11200, R27)		
담당자	한문석	담당부서	경영기획그룹
시행일	2025-03-25		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주식회사 포스코디엑스(이하 “회사”라 한다) 이사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 범위)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2장 구성

제3조(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②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

제4조(권한)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과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.

제5조(의장) ①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장이 되며 회의를 주재한다.
②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이사회 내 위원회) ① 이사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하여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사회 내에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.
1. ESG위원회
2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
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.
1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2.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3.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
4.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
③ 위원회의 설치, 구성과 직무, 운영 및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이사회 및 위원회에 대한 각 규정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할 수 있다.

제3장 회의

제7조(회의의 종류)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한다.
② 정기 이사회는 2월, 3월, 4월, 6월, 8월, 10월,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③ 임시 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개최한다.

제8조(소집권자)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가 소집한다.
② 대표이사 이외의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고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 대표이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③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과 소집 이유를 서면으로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.
④ 제3항의 청구를 했는데도 이사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으면 그 청구한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.

제9조(소집절차) 이사회를 소집할 때는 회의일자를 정하고 [회의일 7일전에](#) 각 이사 [및](#) 감사에게 통지해야 한다. [그러나](#) 이사 [및](#) 감사 전원의 동의를 [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 또는 단축](#)할 수 있다.

- 제10조(제안과 의안 설명)** ① 이사회 의제는 각 이사가 발의하며 각 이사가 이사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는 그 요지를 대표이사에게 미리 통지해야 한다.
- ② 의안을 부의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부의요청서와 부의안건 내용을 이사회 담당임원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제출해야 한다.
- ③ 부의된 의안의 설명은 당해 의안을 주관하는 이사가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단,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.

- 제11조(성립과 의결)**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 통신 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.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
-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.

제12조(부의사항)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과 보고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.

- 제13조(긴급사항)** ①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는 대표이사가 다른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에 따라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4조(관계인의 참석) 의장은 필요 시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 인사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- 제15조(의사록 등의 작성)** ① 이사회 제안부서장은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, 이사회 주관부서장이 의사록을 최종 검토 후 확정한다.
-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, 그 결과, 안건에 대해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 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.
- ③ 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보관하며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.

제4장 보칙

제16조(전문가 조력) 이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제17조(사외이사의 경비) 사외이사에게는 이사회 결의에 의해 이사회 업무 관련 자료와 정보 조사 비용, 참석 여비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정은 [2025년 3월 24일](#)부터 시행한다.

■ 이사회 운영 규정 [별표1]

이사회 결의사항과 보고사항

1.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

가.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

- 1)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, 영업보고서 승인
- 2) 정관의 변경
- 3) 이사,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과 퇴직금에 관한 사항
- 4) 이사, 감사의 선임과 해임
- 5) 자본의 감소
- 6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
- 7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등
- 8)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
- 9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
- 10) 기타 관련 법령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

나.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

- 1) 신주발행 사항의 결정
- 2) 이익 소각 결정
- 3) 명의개서 대리인 선임, 주식 사무 수수료의 수수방법 등 결정
- 4) 주주명부 폐쇄 결정(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나 기타 필요한 경우)
- 5) 사채 모집, 전환사채 발행사항 결정,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사항 결정, 차관도입
- 6) 이익잉여금 처분 결정, 준비금 자본전입 결정
- 7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
- 8)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유고 시 직무대행자 결정
- 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
- 10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
- 11) 이사,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에 대한 세부운영기준
- 12) 비등기 임원의 보수와 성과금에 관한 사항
- 13) 주요 직책 임원에 대한 임명 승인(재무, 기획)
- 14) 중간배당의 결정
- 15) 일반공모증자의 결정
- 16) 정기 또는 임시 주주총회의 소집 결정
- 17) 국내외 지점, 출장소, 사무소, 현지법인의 설치·이전·폐지
- 18) 자사주 매입 및 처분 결정
- 19) 내부회계관리 규정의 제·개정
- 20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[법령](#)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 행위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 분의 5이상이거나 [100억원](#) 이상)
 - 가)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
 - 나)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
 - 다)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
- 21) 전환사채 청구기간 조정
- 22) 신주 인수권 행사기간 조정
- 23)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
- 24) 준법 지원인 임명, 준법통제기준 제정과 개정
- 25)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
- 26) 기타 관련 법령상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

다.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
- 1) 중장기 사업계획 승인
- 2) 1억원 이상 사외 신규출자와 출자지분의 처분
- 3) 50억 이상 사업성 투자 승인
- 4) 출자회사 담보, 보증 등의 채무부담 인수
- 5) 지급보증, 채무인수 및 우발채무를 수반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(책임준공 미이행 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 사업 포함)
- 6) 연도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
- 7) 중요한 자금 차입(장기 차입, 연간 차입금 한도 설정 포함)
- 8) 1억원 이상 채권제각
- 9) 1천만원 초과 기부 찬조

- 10) 10억원 이상 비유동자산의 취득과 처분
- 11) 10억원 이상 연구과제 승인
- 12)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과 폐지
- 13) 1억원 이상 자금 대여
- 14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
- 15) ESG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사의 ESG 경영상 주요 결의사항
- 16) 기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

2.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

- 가. 경영성과와 경영에 관한 주요 집행 상황
- 나. 기타 관련 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
- 다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

[개정이력]

개정번호	개정일자	주요 개정내용	작 성	검 토	승 인
0	이전 이력	○ 제정 : 1989.11.15 ○ 개정 : 1990. 6. 7, 1992. 6.15, 1995. 1. 1 (총 3차례)			이사회
1	1995. 4.27	○ 이사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절차로 제정(QMS화)			이사회
2	1996. 1. 1	○ 일반, 품질규정 통합에 따라 문서번호를 수정			이사회
3	1997. 1.16	○ 규정 주관부서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관상 이사회 부의사항으로 규정된 사항을 추가			이사회
4	1997. 3. 4	○ 정기적인 이사회 소집 일시를 명시하고 이사회 부의 사항을 조정			이사회
5	1997.12. 1	○ 부의사항 중 대손처리·자산처분 대상을 조정			이사회
6	1998. 3.30	○ 서면결의 관련 조항을 삭제			이사회
7	1999. 3. 1	○ 규정을 POS-QMS에서 별도로 분리 운영(사규화)			이사회
8	2000.11.25	○ 이사회 운영규정의 조항 분리, 내용의 명확화와 현실 반영			이사회
9	2001. 4.24	○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 단축 ○ 의안을 제안한 부서장이 의사록 작성 ○ 부의사항 내용 수정과 추가			이사회
10	2002.3.20	○ 이사회 소집을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 ○ 정관개정으로 인한 이사회 부의사항 추가와 삭제			이사회
11	2003.4.18	○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 구분 조항 삭제 ○ 이사회 보존 기간을 영구에서 10년으로 변경 ○ 정관 및 직제규정에 정하는 바를 정관에 정하는 바 로 변경			이사회
12	2004.12.16	○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 사항 추가 - 주식의 액면미달가액 발행, 전환사채청구기간 조정, 신주인수권 행사기간 조정 ○ '중대한'과 같이 기준이 불명확한 내용에 대한 기준 설정 - 중요한 사외 신규투자자 투자 회수 → 1억원 이상 사외출자와 출자 회수 - 중대한 고정자산 처분 → 5천만원 이상 고정자산 처분 - 중대한 대손 처리 → 1억원 이상 대손 처리 - 중대한 산재 보상 처리 : 삭제			이사회
13	2005.4.22	○ 이사회 결의사항 제1조 제2항 제19호 변경 - 변경 전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2에 의한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행위(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) - 변경 후 : 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」 제 11조의2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)			이사회
14	2006.1.1	○ 제9조(부의절차) ①항 삭제, 조문 용어 중 '부의절차'를 '소집절차'로 변경			이사회

14	2006.3.7	- 이사회결의사항 중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에 관한 사항,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삭제			이사회
15	2007.3.5	○ 투자사업 승인 전결기준 개선 : (이사회 결의사항 추가) 30억 이상 사업성 투자 승인			이사회
16	2007.6.29	○ 이사회 결의사항 추가 :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과 해임			이사회
17	2008.11.13	○ (용어변경) 5천만원 이상 고정자산 처분 → 5천만원 이상 비유동자산 처분 ○ (중복조문 삭제) 제3조 3항 ○ (용어변경) 제13조(이사회 참석) → 제13조 (관계인의 참석) 실무담당자 → 관계임직원			이사회
18	2009.3.19	○ 개정 사유 : 정관 주주총회 결의사항에서 '자산 양도' 관련 조항 삭제 ○ 개정 내용 :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에 관한 이사회 결의사항 중 '자산양도' 관련 부분 삭제			이사회
19	2009.7.4	○ 개정 목적 : 정기이사회로 전환 ○ 개정 내용 : 회의의 종류에 관한 제5조 규정 신설 -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함 - 정기이사회는 1월, 2월, 4월, 7월, 10월, 12월에 개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- 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개최함			이사회
20	2010.2.26	○ 포스테이타와 포스콘 합병에 따른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 - 정기이사회 월1회 개최			이사회
21	2012.3.15	○ 상법변경 등에 따른 이사회운영규정 개정(상법 개정 변경사항은 4.15일부 적용)	윤종	박수철	이사회
22	2013.1.1	○ 개정 사유 : 이사회 부의 안건 수 감소에 따른 정기 이사회 개최 주기 조정 ○ 개정 내용 : 월1회 개최 → 2월/3월/4월/6월/8월/10월/12월 개최	김휴갑	박수철	이사회
23	2019.10.2	○ 개정 사유 - 회사 리스크 관리강화를 위한 이사회 결의사항 보완 - '대손 처리'와 '채권 회수' 용어의 명확화 ○ 개정 내용 - 이사회 결의사항 추가 · 준법지원인 임명, 준법통제기준 제정 및 개정 - 이사회 결의사항 제1조 제3항 제5호 변경 · 변경 전 : 지급보증, 채무인수 및 우발채무를 수반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 · 변경 후 : 지급보증, 채무인수 및 우발채무를 수 반하거나 가능성이 있는 사업(책임 준공 미이행 시 대출원리금 손해배상 사업 포함) - 용어 변경 · 변경 전 : 1억원 이상 사외 신규출자와 출자회수 · 변경 후 : 1억원 이상 사외 신규 출자와 출자지분의 처분 · 변경 전 : 1억원 이상 대손처리 · 변경 후 : 1억원 이상 채권제각	한문석	김병석	이사회
24	2020.8.26.	○ 개정 사유: 법 개정 및 공시 규정 등을 반영하여 이사회 결의 사항 개정 ○ 개정 내용: 이사회 운영 규정 제11조(부의사항)의 별표1. 이사회 결의사항과 보고사항 변경 - 1.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 나. 법령 및 정관상의 결의사항 22)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신설 - 1.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 다.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7) 중요한 자금 차입(장기 차입, 연간 차입금 한도 설정 포함)으로 변경 - 1. 이사회에서 결의할 사항 다. 기타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 13) 1억원 이상 자금 대여 신설	한문석	김병석	이사회
		○ 개정 사유: 회사 제과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			

25	2023.3.20.	○ 개정 사유: 회사 정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○ 개정 내용 : 부사장, 전무, 상무 등 임원 호칭 및 대표이사 외 사내이사에 대한 직위부여 내용 삭제, 이사회 운영 규정 제11조(부의사항)의 별표1. 이사회 결의사항과 보고사항 변경 - 1. 나. 7)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으로 변경 8) 대표이사 및 이사회 의장 유고시 직무대행자 결정 신설	한문석	손영규	이사회
26	2023.12.27.	○ 개정 사유 : 회사 정관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○ 개정 내용 : 이사회 내 위원회, 주식매수선택권 신설 및 관련 '결의사항과 보고사항' 추가 - 이사회 운영 규정 제6조(이사회 내 위원회) 신설 - 제12조(부의사항) 별표1. 이사회 결의사항과 보고사항 변경 1. 가. 9)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나. 9)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, 운영 및 폐지 10) 이사회 내 위원회 위원의 선임 및 해임 다. 14)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15) ESG위원회에서 상정한 회사의 ESG 경영상 주요 결의사항 2. 다.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	한문석	손영규	이사회
27	2025.3.24.	○ 개정 사유 : 회사 정관 개정사항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○ 개정 내용 - 이사회 소집통지기간 조정 : 회의일 기준 1일 전 → 회의일 기준 7일 전 -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 상향 : 50억원 이상 → 100억원 이상	한문석	손영규	이사회